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511호

의 안 명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23. 6. 12.

주 문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6월 12일

위원장 전현희

위 원 정승윤

위 원 김태규

위 원 박종민

위 원 박상희

위 원 임성문

위 원 방이엽

위 원 손난주

위 원 강길연

위 원 최정묵

위 원 송현주

위 원 홍세욱

별 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참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2023. 6.

국민권익위원회

ACRC

목 차

Ⅰ. 추진개요 ······································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

1. 각종 자격 · 등록 등 결격사유 규정 합리적 개선 ·········· 2

□ (문제점) '형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기준 불합리

□ (개선방안) 벌금형의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화

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절차 부담 해소 ······························ 6

□ (문제점) 과도한 문구로 인한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 부담 가중

□ (개선방안) 증명서(서식) 문구 표현 개정

Ⅲ. 조치사항 ······································ 9

【참고】 관련 법령 등 ······································ 10

ACRC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과제발굴 : 국민신문고 민원, 언론보도 등

□ 추진배경

○ 국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이에 국민소통창구(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등)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와 그로 인한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으나, 개별 법령 미정비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업 등록, 자격 취득 등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발주청・행정기관에 입찰 등을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의 과도한 문구**로 인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확인 관련 부담 가중**

○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22. 3월 ~ 4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2. 5월 ~ 6월 기관협의 및 안건상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각종 자격·등록 등 결격사유 규정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성가족부]

□ 현 황

○ 「형법」 개정[1]('16.1.6.)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

< 「형법」상 집행유예 대상(제62조 제1항) 변경 >

당초 (~'18.1월)	변경 ('18.1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500만원 이하)**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 시행 시기를 공포 후 2년('18.1.7.)으로 함**

○ 개별 법령들은 관련 **자격 취득이나 사업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하면서, 부적격자 배제를 위해 법령별로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

> **■ 결격사유 규정 예시 - 「법무사법」**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1) 그동안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고,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의 징역, 금고에 더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18.1.7. 시행)

□ 문제점

○ '형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기준 불합리

- **벌금형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업 등록,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 **관련 사례 예시 -「건축사법」**
>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건축사법」사례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유(2호)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 취득이 가능**하나, 오히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3호)에 해당하여 **자격 취득 불가**

○ 「형법」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관련 기준 정비 미비**

- **19**개 법령('23.3월 기준[2])이 위 사례와 같이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등록·면허, 자격 등 제한(결격사유)에 형평성 문제** 제기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일정한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령들은 「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격사유 관련 규정 명확히 정비할 필요**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농업협동조합법」,「모자보건법」,「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신용협동조합법」,「전력기술관리법」,「항로표지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청소년 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유예" 조문 내용 포함 법령 기준 실태조사 결과(23.3.29.)

- 「공인노무사법」 제4조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의 범위가 의문임. 세무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그 '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 됨.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위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징역, 금고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문제** *(국민신문고, '20.8.월)*

- 농협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그러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언론보도, '22.11월)*

□ 개선방안

○ 벌금형·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 범위 명확화

-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18.1월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건축사법」(제9조),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2),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6,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조,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제15조), 「항로표지법」(제21조, 제23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관광진흥법」(제7조, 제11조의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원자력안전법」(제14조, 제85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0조), 「청소년 기본법」(제28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 개정(안) 예시 ① -「건축사법」(자격제한 유형) >

현 행	개선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생 략)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제9조(결격사유)** ① --. 1. (현행과 같음) 2. -- 3.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 4.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예시 ② -「건설산업기본법」(등록·면허 유형) >

현 행	개선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략) 1. ~ 4. (생 략) 5.「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절차 부담 해소

(국토교통부)

□ 현 황

○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통해 개인의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는 경력관리 제도

- **(도입목적)** 각 직무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경력확인 절차)** ① 경력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청, ② 수탁기관은 신고내용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하여 기술등급 산정, ③ 증명서(건설기술경력증 등) 발급

* 근무처, 학력사항, 상훈사항, 교육·훈련 사항, 자격사항 등 관련 증빙 제출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생략)*
>
> 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및 경력관리방법 절차도 >

경력신고자료 작성 (신청자)	⇨	신고내용 확인 (수탁기관→관계기관)	⇨	기술등급 산정 (수탁기관)	⇨	건설기술경력증 등 발급 (수탁기관→신청자)

* (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문제점

○ **과도한 문구**로 인한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 부담 가중**

- **발주청, 행정기관의 입찰 등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기술경력증명 사항 및 **기타 경력 사항*** **증명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

  * 본인 직무 분야(건축, 토목, 기계, 조경, 환경 등)가 아닌 학력 사항, 자격·교육 사항, 외국 자격 등은 건설기술경력증 등에 미포함되어 **별도 증명서 발급**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⑥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u>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을 증명서에 표기</u>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u>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u>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원·사본**(졸업증명서, 자격증, 교육훈련증명서, 상훈 등) **을 함께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 **증명서(서식)의 과도한 문구***로 인해 자료를 제출받는 발주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사항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민원 제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 위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u>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u>

> ■ [별지 9호 서식]에 기재되어있는 건술기술진흥법 외 학력사항은 **<u>학교명의 직인이 찍혀있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기재</u>**되었음에도, 단순히 학과 범위 차이로 인하여 건설기술 분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인데, 하단에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이라는 문구가 서식에 기재되어 있어 **<u>학력 자체에 대하여 '허위 학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이 필요</u>**함
>
> *(국민신문고, '22.12.)*

□ 개선방안

○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증명서(서식) 문구 표현 개정

- 수탁기관에 경력 관련 원·사본을 제출·등록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만큼 **과도한 표현으로 허위 사항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문구 개선**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table>
<tr><th>현 행</th><th>개선안</th></tr>
<tr>
<td>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2.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교육훈련 및 상훈
<table>
<tr><td>자 격</td><td>종목 및 등급</td><td>합격일</td><td>등록번호</td><td>종목 및 등급</td><td>합격일</td><td>등록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학 력</td><td>졸업일</td><td>학교명</td><td>학과(전공)</td><td>학위</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교육훈련</td><td>교육기간</td><td>교육기관명</td><td>과정명</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상 훈</td><td>수여일</td><td>수여기관</td><td>종류 및 근거</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위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td>
<td>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2.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교육훈련 및 상훈
<table>
<tr><td>자 격</td><td>종목 및 등급</td><td>합격일</td><td>등록번호</td><td>종목 및 등급</td><td>합격일</td><td>등록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학 력</td><td>졸업일</td><td>학교명</td><td>학과(전공)</td><td>학위</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교육훈련</td><td>교육기간</td><td>교육기관명</td><td>과정명</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상 훈</td><td>수여일</td><td>수여기관</td><td>종류 및 근거</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위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td>
</tr>
</table>

※ 개선안 문구는 예시일 뿐이며, 세부 문구 등은 관계 기관 의견 반영하여 개선

Ⅲ.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조치대상

세부과제명	조치내용	조치대상
① 각종 자격.등록 등 결격사유 규정 합리적 개선	○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개정 ('18.1월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결격사유 관련 규정 정비 ⇨「건설산업기본법」 등 19개 법률 개정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성가족부
②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절차 부담 해소	○ 건술기술진흥법령외 자격.학력 등 증명서(서식) 문구 표현 개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9호서식] 개정	국토교통부

□ 조치기한 : '24. 6월

참고 관련 법령 등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9호 서식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 · 학력 등

1.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일
	일
	일
	일
	일
인정일수 합계	일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일
	일
	일
	일
	일
인정일수 합계	일

* 기술경력의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인정일수 산정시 소수점이하를 절삭하여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합계와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중 공사종류를 2종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 후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 · 학력 · 교육훈련 및 상훈

자 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 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상 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 위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본입니다.

2023. 6. 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인

ACRC